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질의 · 응답

2021. 8. 12.



교 육 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Q. 개정 고시의 적용일은 언제부터인지?

A. 시행일이 '21.7.6.이므로, 규정적으로는 7.6일을 포함하여 이후부터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부터 적용됩니다.

Q1-1. 표준/자율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경우 과목명에 '현장실습'이 들어가면 안되는지?

A. 수업 외 학점인정 사항은 「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수업 형태로의 학점부여 영역 즉,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현장실습 등의 명칭과 절차로 운영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Q1-2. 표준/자율현장실습학기제 과목명에 표준 또는 자율임을 꼭 표시하여야 하는지?

A.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를 'Co-op'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보공시는 표준만 대상입니다.

Q1-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A. 일부 대학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질의사항으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정보공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대상입니다.

Q1-4. 표준/자율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법 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점인정은 학칙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정하면 되는지?

A. 명칭·절차 등을 현장실습학기제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고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조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Q1-5. 고시 제26조제2호에 따른 대체실습 교과 등의 경우 교과목의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명칭·절차 등을 현장실습학기제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Q1-6. 고시 제18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복교 조치 시에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체 실습 등을 운영할 수 있는지?

A. 명칭·절차 등을 현장실습학기제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Q1-7. 고시 제6조 제8항제2호에서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학칙이 '학칙'의 하위인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규정' 개정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지?

A. 학칙에서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학칙의 하위 규정에서 바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8. 비교과(비학점) 실습의 운영 기준이 있는지?

A. 비학점과정은 「고등교육법」 내 관련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령 또는 일경험 수련생에 관한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Q2-1. 현장실습 참여기관 대상 인센티브 제공 관련 추진 중인 사항
혹은 추진 계획이 있는지?

A.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에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Q2-2.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고시에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A. Q2-1과 유사한 질의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채용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기업이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에 우수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재정지원사업 등에서는 실습기관에 대한
(금전적)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고시 제30조 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고지원비의 지급방법 변경
(학생에 직접지급 → 기업을 통한 간접지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Q21-2를 참고 바랍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실습기관(기업)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는
실습기관에 최대 최저임금의 100분25를 환급

Q2-3. 실습기관 대상 세액공제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도입 시 '22년 실습기관에 소급적용 가능한지?

A. 매뉴얼에 언급한 세액공제 방안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이며 우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5.14 개정)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기업이 별표6 '인력개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언급된 방식의 세액공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4. 실습지원비의 성격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A.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법령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비용'이라는 지원비적 성격의 실습지원비 및 낮은 지급 수준 등의 상황에 기반한 해석 사항으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부(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비과세 처리가 아닌 기존에 처리하였던 소득처리 기준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Q3-1. 고시 제18조 제4항, 제6항의 유급휴일을 실제 출석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유급휴일은 실습지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출석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로 인정하더라도 출석부에는 (공)휴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Q3-2. 대체공휴일은 실제 출석일로 인정되는지?

A. 실습지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만 실제 출석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3.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정보공시를 위한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와 학생,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실습기간을 변경해도 되는지?

A. 학교, 학생 및 실습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습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Q3-4.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외 반차 또는 병가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반차는 출석(지각, 조퇴)으로 처리합니다. 병가의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며 입원이 아니더라도 고시 제18조 제6항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5.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정보공시를 위한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습기간 연장 변경 없이 보장을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A. 보장의 개념이 모호하지만, 실습기관의 연장, 변경 없이 보장을 실시한다는 것은 실습기관 근무제 외 휴(무)일 등에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는 연장실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실습은 실습기관에서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실습 지원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도 고려하여야 하고, 실습과정 상 실습기관의 직무수행 필요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단순히 정보공시 실적을 위한 연장실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습기간의 연장, 변경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 계획단계에서부터 휴일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실습기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Q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관련 법령·규정 등에서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실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 본 고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A. 관련 법령·규정 등에서 별도로 '의무실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고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 고시의 제3조(적용제외)는 예시이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 부처에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4-2. 매뉴얼 231p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만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13조도 포함되도록 수정 가능한지?

A. 본 고시의 제3조(적용제외) 및 매뉴얼의 내용은 예시이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에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Q4-3. 적용 제외 의무실습의 경우 상해/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

A.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내용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세부 운영기준 등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주무부처를 통해 확인하되, 보험의 의무가입 적용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재보험 업무를 소관하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Q5-1. 현장실습을 3, 4학년이 아닌 전체 학년 대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A.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 관련 일련의 전공수업을 이수한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2. 대학원생의 현장실습에도 본 고시가 적용되는지?

A. 적용됩니다.

Q5-3. 방학 중 진행되는 현장실습에도 본 고시가 적용되는지?

A. 적용됩니다.

Q5-4. 학교기업, 센터, 스포츠아카데미 등 학교 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 현장실습이 가능한지?

A.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하나, 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센터, 연구소 등은 실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요건을 갖추고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소속되지 않은 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경우 실습기관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Q6-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은 꼭 문서로 관리해야 하는지?

A. 학교별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유무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해당 양식의 문서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직무수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의 운영계획과 직무내용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협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문서로 받아서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확정 후 학교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여 학생의 권익과 안전망 강화차원에서도 필요한 내용임을 양해 바랍니다.(매뉴얼 102p, 203p를 참고)

다만, 스캔 된 문서를 받고 학교 담당자 최종 확인 후 시스템에 붙임파일로 등록하는 등 학교별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Q6-2. 협약서를 온라인으로 관리가능하다는 의미는 자필서명 날인, 직인 날인 등 원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인지?

A. 모든 표준 서식은 원본 관리를 권장합니다.(별지 제1호 서식은 원본 문서로 관리) 다만, 최근 대학별 온라인관리시스템의 보편적 운영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외한 제2호, 제3호 서식은 온라인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과 동일한 양식 형태 또는 동일한 내용 구성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위한 전자(자필)서명, 전자직인 등의 서명, 날인 행위가 갖춰진 경우에 한합니다. 형식적 날인 또는 서명 날인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 문서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Q6-3. 자율 현장실습 양식 관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랑 구분만 되면 되는지? 가령,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타이틀/명칭을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변경해서 써도 되는건지?아니면 양식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양식을 그대로 사용가능하나 제목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적시하면 안 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양식 포맷 등을 구분되도록 하여 새로 만들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Q7-1. 고시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여야 하는지?

A.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또는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7-2. 운영 전 현장점검 양식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지?

A. 사전 서면점검의 경우 매뉴얼 제1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실제 현장점검을 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필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학교별 자체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행위실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유해성 여부, 제조·생산 활동 중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실습환경을 확인 후 학생에게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Q7-3. 고시 제9조제7항의 중간점검은 기존의 현장지도방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이전에는 1회 이상 현장방문이 필수였는데 이제는 필수가 아닌지?

A.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매뉴얼 제2호 서식)를 활용하여 학생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기존 '지도'를 삭제하고 점검을 강화한 것이며, 학교별 필요에 따라 기존 '지도' 개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영 중간점검은 운영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모든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매뉴얼 제2호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장방문은 고시 제9조 제6항, 제8항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Q7-4. 현장실습 사전/중간 점검은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이 해야 하는지? 학과 지도교수도 가능한지?

A. 현장실습지원센터 직원 및 학과 지도교수·조교 등이 현장실습 사전/중간점검 등에 참여하면 됩니다. (매뉴얼 201p Q-10을 참고)

Q7-5. 실습기관 사전점검이 학생안전에 대한 사전확인이 목적이면, 공공기관 또는 자회사는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점검에서 제외 가능한지?

A. 사전점검은 실습기관의 유형별로 시행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습내용이나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공공기관 및 자회사라 하여 사전점검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자회사가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일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Q7-6. 학생 대상 중간점검의 경우, 매뉴얼 서식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글폼 등 온라인설문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A. 가능합니다.(매뉴얼 71p를 참고)

Q8-1. 국외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인 학생이 자국(본인 출신국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A. 의무입니다.

Q8-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지?

A.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가입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부 고시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학교에서 상해보험을 별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Q8-3. 상해보험 적용 시작일이 반드시 현장실습학기제의 시작일과 동일해야 하는지?

A.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전체에 대해(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보험 적용 시작일이 실습 시작일 이전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Q9-1.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성립신고'가 되어있는 1인 사업장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음. 어떤 것이 맞는지?

A.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이 맞습니다.

Q9-2. 건축 업종의 경우 개인별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단체로 산재보험 가입하면 되는지?

A.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일괄적용이 되는 경우 개별 산재보험가입이 안되며, 개인별 가입여부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현장별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증명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확인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Q9-3. 고시 제18조 제2항 산재보험을 민영 산재보험으로 가입해도 되는지?

A. 고시 제18조 제2항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아닌 기업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민영 산재보험)의 형태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실습기관의 자율이나 이러한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Q9-4. 헤어디자인 관련 현장실습의 경우 1인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도 사업주가 실습생 대상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A. 가입해야 합니다.

Q9-5. 산재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내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서류상 고용 상실일이 표기되지 않음. 고용 상실일이 표기되지 않으면 실습기간 동안 산재보험이 실제 유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현장실습이 모두 끝난 후 서류를 발급·제출받아도 되는지?

A. 산재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주일 내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실습기간 동안 산재보험이 실제 유지되었는지는 추후 완납 증명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습이 끝난 후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Q10-1. 협약 상 현장실습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실습기간 전에 먼저 실습을 시작하거나 종료 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A. 현장실습 운영 전·후 기간이 해당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실습기관과 학생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현장실습학기제 전 또는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경험수련을 위한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 외의 기간에 해당하여 실습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매뉴얼 52p를 참고)

Q10-2. 기업에서 자율 현장실습과 표준 현장실습 동시 운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표준현장실습 전 학생이 경험을 원한다면 자율현장실습 운영 후 표준현장실습이 가능한지?

A. 한 학기를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먼저 진행한 후에, 이후 학기에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표준과 자율은 세부 운영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 기준에 맞춰 운영하여야 합니다.

Q10-3. 현장실습을 학기 시작·종료일과 다르게 개강일 전부터 운영하거나 종강일 이후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A. 이 경우는 학교별 학칙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서 학기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에서 고시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수강 신청, 등록 절차 등이 완료되고 협약에 따라 실습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Q10-4. 현장실습을 방학/학기 연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과편성 및 수강신청은 방학/학기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는지?

A. 과정은 연계하여 운영하더라도 교과편성 및 수강신청은 방학/학기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Q10-5. '21년 겨울방학에 진행한 현장실습을 '22년 1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불가능합니다. 운영규정 제4조제4항및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1. '21.1학기~하계방학 기간 동안 실시된 현장실습의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습지원비를 최저 임금의 75% 이상 학생에게 지급했다면 정보공시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A. '21.3.1.~8.31.까지 시행된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중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만 충족하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적용하여 정보공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Q11-2. 학생이 학기 중 복수의 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할 경우에는 정보공시에서 복수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1개 학기 기준 1회 실적만 인정 가능합니다.

Q11-3. 학생이 하나의 실습기관에 여러 학기에 걸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수강할 경우, 매 학기 수강신청 및 협약 체결 등 고시의 기준을 충족하면 학기마다 실적 인정이 가능한지?

A. 규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의 전공수업 이수 등 교과 이수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만큼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한 전공학점 이수 등의 제한 또는 한도 등의 설정도 필요합니다.

Q11-4.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현장실습운영)제1항에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최저임금의 9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되도록하고 2022년 정보공시작성 지침에는 최저임금 100%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기업을 실습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A. 시행령의 실습기관이 실시하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100분의 10)은 표준과 자율 구분없이 수업으로서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입니다.

즉, 실습기업이 최저임금의 100%를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더라도 실습기관은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100분의 10이상 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이하인 경우이며 실습지원비는 최소한 직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공시의 대상)

Q12-1. 실습생 사전교육(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경우 매 학기 받아야 하나요?

A.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매뉴얼 66~67p, 107p를 참고)

Q12-2. 사전 교육은 1학기+하계방학 연계해서 진행할 경우 1학기 실습 시작 이전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하계방학 때 동일 내용을 반복해서 재교육해야하는지?

A. 사전 교육(OT 교육)의 경우, 현장실습 시작 전 매번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사전교육 내용이 동일한 경우 연계과정(학기+방학, 방학+학기)으로 진행되는 학생은 총 실습 기간 시작 전 1회만 실시해서 중복된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 과정으로 편성하더라도 실제 학교에서는 학기과정과 방학과정(계절학기)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각 과정별 수강신청도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안전교육)의 경우, 최초 현장실습 시작 전 1회(재학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Q13-1.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실습기관에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은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협약서 체결, 운영계획서 수립 시 실습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실습기관에 대한 사전점검과 중간 현장점검을 실시 하고, 주기적인 실습기관 및 학생과의 업무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제9항에 따라 학생이 통보해 온 경우 학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13-2. 직무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출석일에서 제외되는지?

A. 직무 관련 교육은 실습기관에서 참여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따라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시간) 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실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실무수행 과정의 중간점검 및 피드백, 수행결과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기타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경우 출석일에서 제외됩니다.

Q14-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양식에 대학 총장 또는 현장실습 지원센터장 대신 단과대 학장 직인으로도 가능한지?

A. 단과대 학장 직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Q14-2. 우리 대학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산학인재원 소속부서(센터) 조직으로 협약 체결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아닌 산학인재원장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위 부서장으로 협약체결 진행하여도 무관한지?

A. 산학인재원장 직인을 추가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Q14-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양식을 참고하시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양식을 구분하여 마련하시면 됩니다.

Q14-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출석부(별지 제3호 서식)은 안내된 서식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지?

A. 그대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식과 동일한 항목과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뉴얼 102p를 참고)

Q15-1.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미달되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학생 개인이 법률적인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지?

A. 학교는 고시 제18조 제9항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Q15-2. 실습기관-학생-학교 간 협의하는 경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고시 제25조 제4항에 따른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15-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제25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면 실습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데 각 호에 대한 정량적 기준(교육환경 및 여건)이 있는지?

A.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 159p를 참고 바랍니다.

Q15-4. 고시 제25조 제4항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15시간이 넘게 운영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태조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Q16-1. 실습지원비 지급 시 세금은 제외하고 세후로 지급하는지?

A. 세후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재부 및 국세청 등과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Q16-2. 공연업계의 경우 임금을 선금/중도금/잔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습지원비도 이러한 형태로 지급 가능한지?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에 따르면 실습지원비를 월/주 기준으로 당월/익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위 경우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Q16-3. 학교지원금을 실습지원비 공시에 포함하지 않고, 학교 교비를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금액 무관하게 상관없는지?

A. 학교 교비를 학생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장학금은 정보공시 상의 실습 지원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Q17-1. 1주 4일 근무제인 경우 근무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월/화/목/금 등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매뉴얼은 휴일 제외하고 매일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보고 있음)

※ (유사질문) 실습기관의 근무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지?

A. 월화수목 또는 화수목금 근무형태가 아니어도 실습기관의 근무제로 운영된다면 연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 근무요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습기관의 근무제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습기관의 근무제가 수요일부터 일요일인 경우 해당 요일로 운영하면 되며,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일로 보장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Q17-2. 실습기관의 근무제가 격일(화목토 / 월수금일 반복)인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불가능한지?

A. 고시 제21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해야 하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불가능합니다.

Q17-3. 1일 8시간 기준으로 협약서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무 일자가 화요일부터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는 고시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A. 이 경우에는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므로 일요일과 월요일이 연장 실습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는 가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관련 사항을 사전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공지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17-4. 고시 제22조에서

‘주 단위 실습시간 수’는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로 계산하고 4주 이상인 경우에는 월차(연차) 수당도 포함해야 하는지?

A. 제21조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이 부여됩니다.

1개월 이상으로 편성된 실습기간 내에서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을 월 단위 혹은 주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 혹은 월별 산출기준은 매뉴얼 14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7-5. 전일제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다른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한데, 학생 졸업을 위해 특정 학기에만 개설되는 필수과목을 듣기 위해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수강신청 가능한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시고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달리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Q18. 실습기관 주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 기준(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해당 기관과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는 현장실습이 아닌 수업 외 학점인정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 형태로 학점부여 영역 즉,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로 운영하거나, 비학점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19. 학교가 하나의 실습기관과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는지?

A. 불가능합니다.

Q20-1. 재택실습이 현장실습기간의 25%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재택실습이 25%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A. 고시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복교·휴학 또는 대체실습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Q20-2. 재택실습이 실제 계획일대로 운영되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A. 고시 제27조에 따라 재택실습 운영계획을 받고, 제9조 제7항, 제8항 등에 근거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Q21-1. 고시 제30조 제5항제1호의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언제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해야 하는지?

A.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라 '22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계속사업은 결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중 계속(진행 중)사업은 고시 시행일인 '21.7.6.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고시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7.6.부터 협약이 체결된 현장실습은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라도 고시를 따라야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Q21-2.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22년부터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고 학교에서 실습기관 요청에 의해 실습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액 75%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학교가 최저임금액 25%를 학생에게 지급할 수는 없는지?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A.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4호내지제5호 관련 사항으로 실습기관에서 우선 학생에게 100% 이상을 지급하고, 그 후에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25%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예산 활용에 있어서 '국고 및 지방비'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고시 제22조를 따라서 실습기관은 최저임금액 75% 이상을 학생에게 지급하면 되고, '국고 및 지방비'는 예산 활용 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합니다.

Q21-3. 실습기관이 주단위(4주) 기준 최저임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했을 때는 학교에 주단위(4주) 최저임금액의 25% 지급을 요청하고, 월단위(1개월) 기준 최저임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했을 때는 월단위(1개월) 기준 최저임금액의 25% 지급을 요청하면 되는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고시 제21조제1항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주 기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기존에는 많은 학교에서 4주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으로 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고시 제30조제5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Q21-4.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현장실습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출식은 고시 제22조를 따르면 되는지?

A.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현장실습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은 고시 제30조 제5항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야 합니다.

Q21-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은 '22년 1월부터 적용되는지? 3월부터 적용되는지?

A. '22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부처의 결정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6. 고시 제30조제5항의 적용 대상은 현장실습 지원에 관해 별도 편성된 사업만인지? 아니면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에도 해당되는지?

A. LINC+,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과 타부처 SW중심대학 등 산학협력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현장실습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부처의 결정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계속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7. 학교기업 관련 재정지원사업에도 본 고시가 적용되나요?

A. 학교기업 역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교기업 관련 재정지원사업도 타 사업과 동일하게 계속사업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Q21-8.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21년 하반기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식도 모두 개정된 고시의 내용을 따라야만 하는지?

A. 부칙 제1조제2항의 의미는 고시 시행일인 '21.7.6.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고시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7.6.부터 협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학기제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라도 고시를 따라야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Q21-9.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재정지원사업비로 홍보물품비, 순회지도비, 관련 공모전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지?

A. 고시 제30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준수하면 되며, 예산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실습 제도와 무관하게 해당 재정 지원사업 소관 부처(부서)에 확인하시어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Q21-10. 한국장학재단 주관 취업연계 인턴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등 실습기관이 아닌 프로그램 주관 기관에서 학생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로 볼 수 있는지?

A. 실습기관과 학생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습 지원비로 볼 수 없습니다.

Q21-11. 한국장학재단 주관 취업연계 인턴십은 올해 2학기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지?

A. 부칙 제1조제2항의 의미는 고시 시행일인 '21.7.6.부터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고시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7.6.부터 협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학기제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라도 고시를 따라야 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Q21-12. 매뉴얼상에 ICT인턴십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운영규정상 정부재정지원사업은 22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이번 2학기에는 현장실습으로 운영 가능한지?

A. 부칙 제1조제2항의 의미는 고시 시행일인 '21.7.6.부터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고시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7.6.부터 협약이 체결된 현장실습학기제는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라도 고시를 따라야 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Q21-13. ICT 인턴십의 경우, 실습기관 주도형 현장실습의 성격을 띄는데, 이번 학기에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성격으로 운영된다고 함.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지?

A. 금년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가능합니다.

Q21-14. 고용노동부 IPP장기기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부에서 배포된 협약서 양식이 아니라 고용부 협약서 양식을 체결한 경우에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이 가능한지?

A. 사업에서의 협약서 양식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부처와 협의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Q21-15. 링크사업단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면 되는지?

A. 운영규정 시행('21.7.6.)에 따라 LINC+사업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LINC+사업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LINC+사업은 22년 2월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이고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른 핵심성과지표(정량평가) 정의서 상 산출기준에 따라, LINC+사업 내 현장실습 운영실적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된 성과가 모두 인정됩니다.

※ '21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산학협력 고도화형) 육성사업 추진계획

4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1. 산출 기준

- 산출 대상 : LINC+ 참여학과 / 전 계열(※ 일부 학과 제외)
- 산출 기준 : '20.3.1. ~ '21.2.28. 기준
 -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이 다른 경우,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실적 산정
- 산식 = (사업단 참여학과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사업단 참여학과의 3, 4학년 재학생 수) × 100
 -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사업단 참여학과의 4학기 이상 수료 재학생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로, 다음 3가지 산식의 합으로 산출함
 - ① 가중치(4.0) × 12주/3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② 가중치(2.5) × 8주/240시간 이상 12주/360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③ 가중치(1.0) × 4주/120시간 이상 8주/240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3, 4학년 재학생 수) '20.4.1 기준 참여학과의 3,4학년 이상 전체 재학생 수
 - * 현장실습은 기업과 연계·운영하는 4주 120시간(1일 6시간/주 30시간 기준) 이상의 현장실습에 한함(4주 미만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 외국인 유학생 실적 포함
 -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실적에서 제외(의료, 보건계열, 국가자격증과 연계되어 실습을 필요적으로 운영하는 학과, 야간학과는 모수 및 실적 수에서 제외)
 - *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인정 가능하나, 1개 학기 기준 1회의 실적만 인정
 - *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타 학과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인정(원 소속학과가 비참여학과일 경우 분모(전체 재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적 인정 불가)

2 점검 자료

- 학생 현장실습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세부현황의 현장실습 교과목 및 이수자 명단과 연계한 현장실습 정식 교과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 커리큘럼 반영 자료, 각 과목별 운영 계획

Q21-16. 인턴십도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우선 질의한 인턴십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합니다. 만약, 질의한 인턴십이 일반적인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제3호에 이르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6조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1-17.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지역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졸업예정자만 가능),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에게 월 182만원이 지원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다른 사항들, 교육시간 및 산재보험 등을 다 충족한다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A. 현장실습학기제에서는 여러 운영 사항과 실습지원비 기준에 따라 표준과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지원비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지급하여야하는 산학협력법 및 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습지원비 지급수준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질의사항은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수업방법(현장실습학기제)과 구분하여 비교과형태 또는 비학점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Q21-18. 재정지원사업 관련, 학교에서 기업으로 지원하는 25%에 대해 학교 및 기업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3호내지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정부부처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도 추후 사업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21-19.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재정지원사업비로 실습기관에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25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3호내지제4호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계속사업을 제외한 22년부터의 신규사업이나, 년단위 사업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계속사업은 결정을 달리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3호내지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금년도 사업 내지 계속사업에서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Q22-1. 매뉴얼 p.133의 대체실습은 학교에서 간단히 추진 가능한 내용이 아니며,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 수강신청, 담당 교수 시수부여 및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변경·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많은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교육부에서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대체 실습 교과목을 마련 요청

A. 대체실습 교과 운영은 재난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도적 상황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사운영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내 제도화한 사항입니다. 대체실습 교과는 실질적으로 일반 실습교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대체실습 교과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20학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20.3.2.)’을 통해,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이러닝, 주말강의, 저녁강의 등 현장실습 시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수강신청 가능한지?

A.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시간에 겹치지 않는 시간에 온라인 등의 수업은 수강 가능합니다.

Q23-2. 성적 평가 관련, 현재 우리 대학은 지도교수 평가와 산업체 지도담당자의 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고시된 규정의 성적 평가 양식을 보면 기업체 평가양식만 있음. 앞으로는 기업체 평가만을 가지고 성적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A. 매뉴얼 205p A-19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24-1. 고시 제9조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반드시 직제명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하여야 하는지?

예) 우리 대학의 경우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대학의 모든 현장실습을 총괄운영하고 있음. 즉, 현장실습을 총괄하는 조직을 위와 같이 명칭이 다르더라도 상시 기구화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라는 명칭의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지?

A.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매뉴얼 63~65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